산업보건 **주요뉴스**

사업장당 10억 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 2022년 총 3,563억 원 지원, 1. 3.(월)부터 접수 –

재정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우선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강화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송병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 · 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 · 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563억 원('21년 대비 335억 원 증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으로,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 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최근 10년간('11~'20년) 제조업의 끼임 · 추락 사고사망의 73.6%를 차지하는 고위험 3대 업종의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당해 연도 보조금과 융자금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한계를 타파하고 '22년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융자금과 동시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 공정 · 환경 개선 설비로, 다음과 같다.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 · 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 등 부속설비 포함)**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 · 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4.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신청은 1월 3일부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공정개선 지원 사업장은 먼저 지원금을 신청한 후 결정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한 매뉴얼 발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종사자 보호 의무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21.11.19.)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이 임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령을 쉽게 이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내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지자체 발주공사 · 수행사업 산재 예방

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폐기물 운반 작업, 녹지 정비사업 등 지자체가 직접 주민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관내 사업장 산재 예방

산안법 시행과 관련하여 일반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 · 보건을 위해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산재 예방 활동 방안도 포함했다. 지자체에서 제정할 산재 예방 조례의 표준안, 지역별 산재 예방 대책의 구성안, 관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 홍보 방안, 업종별 사업장 지도점검 방법 등을 자세히 수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역할과 준비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새로운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매뉴얼에는 지자체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 · 운영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주요 내용과 준비 방법을 제시했다.

궁금한 환경보건 정보, 한곳에서 편리하게 봅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환경성 질환 등 환경보건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ehtis.or.kr)'(이하 환경보건망)을 1월 10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환경보건망은 국민의 환경보건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환경보건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기상청,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 22개 시스템으로부터 환경유해인자 등 198종의 정보(데이터)를 수집하여 국민을 비롯해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보건망은 초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 성분, 미세플라스틱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환경유해인자를 소개하고 유해인자별 건강 영향 및 예방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그림, 사진 등 시각화 위주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내 주변의 환경보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용자 위치기반의 '지역환경보건정보'* 서비스 및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보건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 대기오염현황, 기상, 건강알림(천식, 피부염 등 경보) 등 제공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 환경피해구제 등 제공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다양한 환경보건 연구자료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정보도 제공한다. 연구자는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학회* 논문과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환경보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보건학회,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Association(미국) 등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해외 전문연구 기관 등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한눈에 보는 환경보건 데이터'를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지역 환경보건현황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 데이터(대기, 수질, 화학물질 등), 사회 · 경제 데이터(인구, 소득, 연령 등), 질병 데이터(천식, 아토피 등 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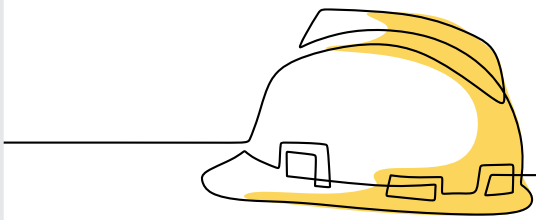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화학 사고 예방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화학안전 시설의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세 ·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학 사고를 예방한다. 올해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예: 누출감지기, 방류벽)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시설 노후도 및 영세성 등을 고려(신청 시 제출된 자료 및 현장 확인)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며, 사업장 1곳당 평균 2,700만 원이 지원될 경우 270여 개 곳의 사업장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사전에 배포한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1월 18일까지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서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 일정을 이달 말에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의 화학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재산 및 환경피해를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